

국내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통한 원문복사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s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s based on the Information Service Networks: Focus on Copyright Issues

정경희 (Kyounghee Joung)**

김규환 (Gyuhwan Kim)***

초 록

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 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기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pyright problem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based on interlibrary loan which are operated by KERIS and KISTI according to the agreements with KORRA.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the libraries and copyright works to implement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Also, the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is the only between librarians and there is no provisions in the agreements for individual users who are not affiliated to libraries. This study suggests introduction of the ground provision for the interlibrary loa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development of authoritative guideline for detail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Also, the study suggests that end users to request documents could be print out it but the library have to install systems to avoid copyright infringement. Finally, the study proposes the copyright fee based model for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for individual users.

키워드: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저작권, 전자배송서비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interlibrary loan, document delivery service, copyright,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 KORRA, copyright fee paid photocopy service

* 본 연구는 KERIS의 “대학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 방안 연구” 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제1저자)

***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yuhwan@jj.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5년 9월 6일 ■ 최초심사일자: 2015년 9월 14일 ■ 게재확정일자: 2015년 9월 19일
■ 정보관리학회지, 32(3), 413-432,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413]

1. 서론

일반적으로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ILL)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협정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자료의 실물 또는 복제물을 요청하고 수신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말한다. 그 중에서 자료의 복제물을 전달하는 원문복사서비스(이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도서관들이 상호 필요성에 의해 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지역별, 주제별 협의회를 구성한 후 각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 같은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중심으로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서비스 협력체들은 웹기반 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해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업무뿐만 아니라 중앙비용정산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자료의 복제물을 전달하는 방식을 일반 우편과 팩스에서 전자적 배송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공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들은 이용 저작물의 저작권자(출판권자 포함)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서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홍재현, 2005).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면책 내용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면책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도 연구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홍재현, 2004; 박영길, 2005).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KISTI가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작권관리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와 협정서를 각각 2008년도와 2010년도에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이 협정을 체결한 목적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저작권관리단체와의 협정체결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관리단체와의 협정체결은 도서관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정보서비스 협력체 측면에서 보면 KISTI는 복전협과 직접 체결한 협정서를 적용하여 원문복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면 KERIS는 복전협과 별도로 협정서를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를 적용하여 원문복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전협과 체결한 협정서를 토대로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KISTI가 각각 복전협과 체결한 협정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

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는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http://www.domeri.or.kr>)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였고 KISTI가 체결한 협정서는 내부 자료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당 기관의 협조를 통해 협정서를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규정 내용, 원문복사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전자배송 운영방식과 저작권 처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RIS와 KISTI가 적용하고 있는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규정집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안내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저작권법 제31조와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국내 저작권법 제31조에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 그동안 제31조 제3항을 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 즉,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모든 도서관이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다. 즉, 이용자의 요청이 있기 전에 도서관간의 다수의 복제 전송을 미리 예측하여 소장 자료를 디지털 복제한 것이므로 그것의 이용과 도서관간의 복제 및 전송에 따른 다양한 조건(예, 보상금, 동시이용자수 제한, 판매용 자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관간전송 불가 등)을 부여하였다.

이와는 달리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한 복제이며 요청에 따른 특정 자료에 대한 복제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31조 제3항에 의한 복제 및 전송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제31조 제3항을 그대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서비스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다. 예컨대, 제31조 제3항은 관간전송을 발행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료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주된 요청자료인 저널은 최신성을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제한조건을 준수할 경우 대다수 이용자의 원문복사서비스 요청은 거절될 수밖에 없다.

이용자 요구가 있을 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1인 1부만 복제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제31조 제3항과 연계하여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제31조 제1항 제1호는 타 도서관으로부터 복제,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인쇄본 자료를 디지털화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제공하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인쇄본 자료를 복사기에 복사해서 제공하면 보상금 없이 제공할 수 있다. 관간전송을 통하여 받은 자료를 출력할 때 보상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빈번한 복제와 출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예측에 의한 복제나 전송이 아니라 이용자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한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규정이 잘못 적용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2.2 선행연구

그동안 도서관의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그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심원식, 2010),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 원문복사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김지영, 이선희, 2013), 의학 분야의 원문복사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연구(장혜란, 김정아, 2012)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오동근, 황재영, 여지숙의 공동연구(2012)와 최재황(2008b)의 연구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도 및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다. 최재황(2008a)의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 개선 방안”은 학술지 선정이나 예산 배분, 컨소시엄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유수현, 김혜선, 2012)과 원문복사서비스의 동향 분석(이선희, 김지영, 김혜선, 2012) 등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

만 국내의 현황 분석에 기반한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는 아니었다.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면책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히 상호대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도 있었다. 곽동철의 연구(2013)는 그동안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 도서관단체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향후 저작물 이용 보상금 협의체의 운영, 보상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보상금 수령단체 구조 및 기능 조정, 저작물 재능기부 등 정책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호대차에 따른 자료복사의 경우 기존에 도서관 단체와 저작권관리단체가 체결한 협정서의 정신을 살리면서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정비 방향을 제안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상의 연구들에 비해 김종철의 연구(2012)는 상호대차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부분적으로 제안하였다. 연구 전체에서 도서관 보상금 징수와 분배 내역의 공개, 동일 교육기관 내의 여러 도서관 간에 이루어지는 전송은 도서관내 전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복제방지조치 적용대상을 디지털 형태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문제는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타도서관의 이용자도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재현의 연구(2004, 2005)와 박영길의 연구(2005) 또한 도서관 면책규정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상호대차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

선 홍재현의 연구(2004, 2005)는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제31조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상 상호대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대차 면책적용과 관련한 해석상 이견이 있고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의 관행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서관이 면책 규정을 명문화하는 노력을 하되, Ariel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일단 중지해야 하며 학술저작물 계약시 '서면계약'으로 상호대차를 명시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지침에 현 저작권법 제31조에 기준하여 "도서관 등이 도서관 상호협정에 따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사진 복제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우편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 이 경우 복제에 이용된 도서 등은 복제를 요구받는 도서관이 보관한 도서 등에 한한다."고 제안하였다.

문화관광부의 연구보고서로 제출된 박영길의 연구(2005)는 Ariel을 통한 상호대차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점, 이용자 요구에 의한다는 점, 일부분 복제, 1인 1부 제공한다는 점, Ariel을 통한 출력은 복제라는 점 등으로 보아 '복제'라는 이용형태는 충족한다고 보았지만, Ariel의 경우 특정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전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제31조 제3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에서 Ariel을 통한 상호대차는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이라는 목적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기 어

렵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1항 제1호의 경우 타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물 제공을 허용하고 남겨진 원본을 즉시 삭제하는 의무를 도서관에 부여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두 연구 모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저작권법 제31조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 방안이 도서관간에는 파일을 주고받되 최종이용자에게는 출력을 제공하지는 방안으로서 이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현대의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외의 연구로 최근 개정된 영국저작권법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ornish의 연구(2015)가 있다. 특히 상호대차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가 음반자료나 필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고 인쇄저널과 더불어 CD-ROM과 온라인 전자저널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호대차 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Frederiksen 등(2011)은 E-book의 상호대차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 현황을 미국의 도서관 사서 1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라이선스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E-book에 대한 상호대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상호대차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상호대차 권리에 포함되므로 도서관간 혹은 도서관 내부적으로 E-book 라이선스에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 복전협과 체결한 협정서의 내용 분석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2008년 12월에 ‘대학도서관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KISTI는 2010년 3월에 ‘디지털 원문전송 서비스를 위한 KISTI-한국복사전송권협회간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를 적용받는 대상기관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원인 대학도서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¹⁾ 실물자료 대출과 원문복사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협정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KISTI가 체결한 협정서를 적용받는 대상에는 KISTI 원문복사서비스 협력 도서관뿐만 아니라 소속 도서관이 없는 개인 신청자도 포함되며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협정내용만을 담고 있다. 두 협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기관이 체결한 협정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3.1 공통된 주요 협정 내용

3.1.1 일반적 사항

두 협정서는 모두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를 근거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신청도서관이 저작권법 제31조에 부합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사항, 신청도서관이 이용자 및 신청 자료에 대하여 보존해야 할 기록, 해당기록에 대

한 복전협의 열람요청 등 의뢰 및 접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협정서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하여 대부분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컨대, 신청도서관이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자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그 자료를 소장한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의 제공을 의뢰한 도서관을 말하며, 제공도서관이란 신청도서관으로부터 그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복제물의 제공을 의뢰받은 도서관을 말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그 자료를 소장한 다른 도서관에 자료의 복제물 등을 요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1.2 협정대상 자료

협정대상 자료는 복전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3.1.3 복제분량 및 가능범위, 복제빈도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할 수 있는 분량을 ‘일부분’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두 협정서에서는 모호한 ‘일부분’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6조(복제제한 및 책임)에 따르면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 복제에 따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두 협정서도 이 규정에 따라 자료의 1/3을 복제 분량으로 정하고 있다.

1) 다만, 대학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 분관 및 각 단과대학 등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 서비스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저작권의 적정한 관리를 행하는 도서관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다음 호가 발행된 것 또는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저작물의 경우에만 복제할 수 있다고 그 가능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다. 또한 동일 자료에 대한 복제 빈도에 대한 제한도 정하고 있는데, 단행본의 경우 동일한 자료를 연간 11회 이상 복제 신청한 경우 그리고 연속간행물의 경우 최근 3년간 발행된 동일 권호에서 연간 11회 이상 복제를 신청한 도서관은 그 자료를 구입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4 복제물 전달방법

복제물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우편 전달과 전자적 전달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우편 전달에 대해서는 제공도서관이 해당 자료의 복제물을 신청도서관에 우편 및 택배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신청도서관이 이 자료를 받아서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자적 전달의 경우 제공도서관은 신청도서관이 요구한 자료를 복제하여 신청도서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수신한 신청도서관은 이를 종이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신은 팩시밀리, 인터넷(화상 이미지를 전자메일에 첨부해서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 자료의 판면의 화상 이미지를 전기신호 또는 디지털형태로 변환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사용해서 전송하는 것으로, 이때 신청자에게는 전자적·자기적인 기록의 복제물은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적 전달의 경우 신청도서관 또는 제공도서관은 당해자료의 중간복제물을 작성한 것

이 있을 때에는 그 중간복제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차이가 있는 주요 협정 내용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에서 원문복사서비스는 회원도서관이 소속이용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KISTI가 체결한 협정서에는 회원도서관뿐만 아니라 개인 신청자도 원문복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개인 신청자'라 함은 소속 도서관의 부재 등으로 KISTI가 제공·운영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으로 자료를 신청하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가 '도서관 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면 KISTI가 체결한 협정서는 '도서관 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개인 신청자간에 이루어지는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KISTI가 체결한 협정서에는 개인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전자배송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저작권료를 의미함)를 지급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서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이 범위)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에 속하지 않은 기관 및 개인 신청자가 제공도서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신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이용료(면당 10원)를 지급하고 이용료의 지급은 KISTI와 복전협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내 정보서비스 협력체 기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

4.1 KERIS

4.1.1 관련 규정

KERIS에서 운영되는 원문복사서비스는 514개 참여 회원기관간 자료공동이용협약인 '도서관 자료 상호이용 규정'(2014년 5월 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료의 신청은 KERIS의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자료 발송은 보통우편, 특급우편, 팩스, 전자배송, 택배, 원문링크의 6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제6조(자료의 신청 및 발송방법) 제3항), 전자배송의 경우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복전협이 맺은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의 자료복제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자료의 신청 및 발송방법) 제4항). 이는 KERIS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배송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KERIS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자료공동이용협약인 '도서관 자료 상호이용 규정'을 토대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의 자료복제에 관한 협정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문복사 제공 자료의 범위는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이며 회원기관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장도서관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일부 자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행본과 학위논문의 복사범위는 전체자료의 부분 복사(50% 이하)이며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지

수록논문 1건 단위 신청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문복사에 의한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도서관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신청도서관은 원문복사를 신청한 자관의 이용자에게 저작권법 준수 동의를 받은 뒤 반드시 아날로그 형태로 자료를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4.1.2 원문복사서비스의 유형

KERIS에서 운영되는 원문복사서비스는 상호대차 회원기관의 소속도서관을 통해 비용납부와 자료인수가 이루어진다. 소속도서관 이용자는 소속도서관을 통해 국내 대학 소장 자료에 대해 원문복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요금 지불은 소속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수령할 때 직접 납부하는 후불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한 자료는 제공도서관으로부터 우편, 택배, 팩스, 전자배송, 원문링크 등의 전달방식으로 신청도서관에 전달되고 소속도서관 이용자는 신청도서관을 방문하여 담당사서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쇄물 형태로 자료를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반면, KERIS는 소속기관이 없는 일반 회원 가입자도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소속기관이 없는 일반 이용자(KERIS가 사용하는 명칭)는 개인 신청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이용자는 회원 가입시 일반 이용자를 선택하게 되면 선불방식 비용납부를 통해 도서관에 원문복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에게 자료 제공의사를 밝힌 국내 도서관으로 원문복사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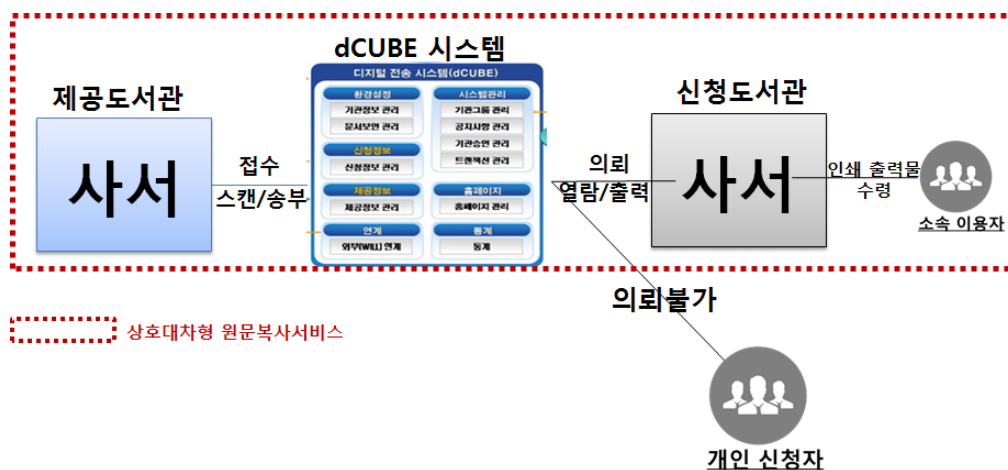
원문은 일반 이용자가 지정한 배송지로 우편이나 택배로 발송되며 전자배송 방식은 이용할 수 없다. 회원기관의 소속도서관 이용자의 경우에도 자료 신청서 작성 시 '선불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와 같이 개인 신청자 자격으로 자료를 지정한 배송지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4.1.3 전자배송과 저작권 처리 현황

KERIS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0년 2월부터 전자배송시스템(dCUBE: Digital Document Delivery)을 도입하였다. dCUBE 시스템은 앞서 제시된 '도서관 자료 상호이용규정'과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서'를 적용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dCUBE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서비스는 KERIS에 회원가입한 개인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고 회원기관

의 소속도서관의 이용자가만이 이용할 수 있다. 소속도서관의 이용자의 경우에도 제공도서관이 전자배송서비스 참여기관인 경우에만 전자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²⁾. 즉, dCUBE 시스템은 '도서관간 이루어지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dCUBE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서비스 운영방식을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dCUBE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서비스의 절차는 제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를 스캔하여 제공도서관 담당사서가 dCUBE 시스템에 저장하면 신청도서관 담당사서가 PDF뷰어를 통해 전자원문을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신청도서관의 담당사서는 dCUBE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원문을 열람한 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인쇄 출력물 형태로 전달하게 된다. 즉 신청도서관 소속 이용자는 전자원문을 파일형태로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신청도서관의



<그림 1> dCUBE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서비스

2) 2015년 2월 16일 기준, 전자배송서비스 참여기관은 252개 기관이며 참여기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URL을 통해 알 수 있음. <http://www.riss.kr/ill/EtransLibList.do>

〈표 1〉 dCUBE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 과정에서 저작권 처리 현황

제공도서관		전자배송시스템		신청도서관	
복제대상 자료유형	복제가능 분량	배송 방식	복제방지 조치	담당사서 전달방식	소속이용자 전달 방식
• 소장 인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 학술지 수록논문: 1편 • 단행본/학위논문: 최대 20 페이지	• 제공도서관이 dCUBE 시스템으로 스캔/송부	• dCUBE 시스템 내 DRM 모듈 적용	• 전자원문 직접 다운로드 불가 • 1주일간 전용뷰어 통해 열람 / 10회 출력 가능	• 담당사서로부터 인쇄 출력물만 수령 가능

담당사서를 통해 인쇄 출력물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저작권관리시스템(DRM)에 의해 신청도서관 담당사서는 해당 전자원문을 dCUBE 시스템에서 1주일 동안만 열람할 수 있고 10회에 한하여 출력할 수 있다. 전자배송서비스시 원문복사 복제범위는 학술지 수록 논문은 1편이며 단행본과 학위논문은 최대 20쪽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를 적용할 경우 신청도서관 또는 제공도서관은 당해자료의 중간복제물을 작성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중간복제물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한 후 파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dCUBE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 과정에서 저작권 처리 현황을 요약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2 KISTI

4.2.1 관련 규정

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문복사서비스(NIDS: NDSL Information Delivery Service)는 NIDS 협력망에 포함된 국내외 협력기관간 'NDSL DDS 협력망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3년 9월에 제정되었고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KISTI를 통해 이루어지는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최신 규정내용은 현재 NDSL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원문복사서비

스 관련 안내정보를 토대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전자배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KISTI가 2010년에 체결한 '디지털 원문전송 서비스를 위한 KISTI-한국복사전송권협회 간 협정서'를 적용하고 있다. 정리하면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는 NDSL 홈페이지에 공지된 원문복사서비스 안내정보를 토대로 '디지털 원문전송 서비스를 위한 KISTI-한국복사전송권협회 간 협정서'를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2 원문복사서비스의 유형

KERI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ISTI가 운영하는 원문복사서비스의 유형은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와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로 구분된다.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NIDS 협력기관의 소속도서관 이용자가 소속도서관의 담당사서로부터 원문복사서비스의 후불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속도서관 이용자는 NDSL에서 검색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자료(학술지, 학술회의록 논문, 보고서, 학위논문, 특허, 규격 등)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요금 지불은 소속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수령할 때 직접 납부하는 후불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한 자료는 제공도서관으로부터 우편(보통/특급), 팩스, 직접방문, 전자전송의 전달방식으로 신청도서관에 전

달되고 소속도서관 이용자는 신청도서관을 방문하여 담당사서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쇄물 형태로 자료를 수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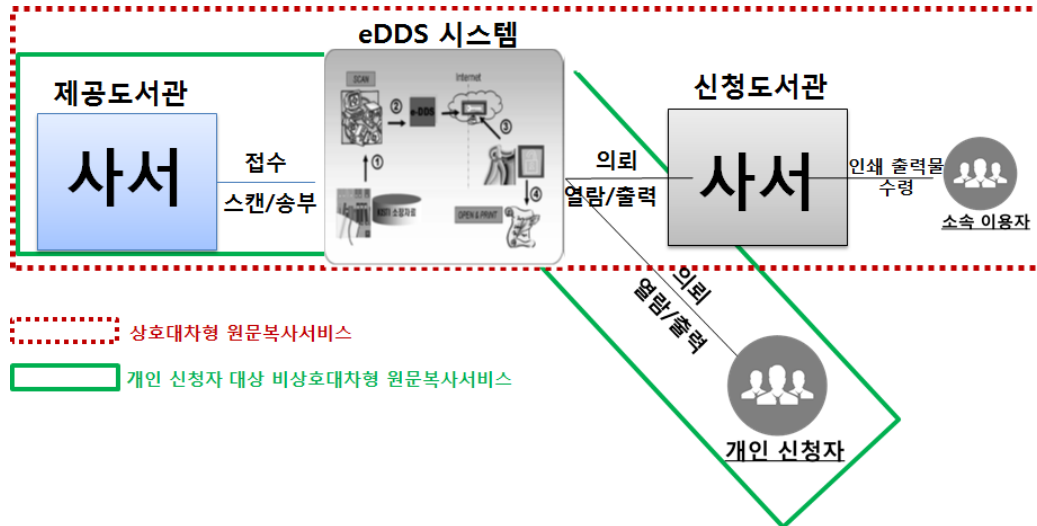
반면,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NIDS 협력기관의 소속도서관 이용자가 소속도서관의 담당사서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소속도서관이 없는 일반 회원 가입자(개인 신청자)가 신청대상이 된다. 개인 신청자는 선불결제 회원과 예탁금 회원제로 세분되는데 예탁금 회원은 특별히 NDSL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예탁금을 납입하여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용자를 말한다. 이럴 경우 요금 지불은 선불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한 자료는 제공도서관으로부터 우편(보통/특급), 팩스, 직접방문, 전자전송의 전달방식으로 개인 신청자에게 전달되고 개인 신청자는 지정한 배송지로 우편이나 택배로 받아보거나 자신이 기입한 이메일이나 [My NDSL] 메뉴내 [신청내역 및 조회]에서 전자원문을 열람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협력기관의 소속도서관 이용자의 경우에도 선불결제 회원과 예탁금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개인 신청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문복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2.3 전자배송과 저작권 처리 현황

KISTI는 2011년 1월부터 전자배송시스템(eDDS)을 도입하여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배송서비스는 '디지털 원문전송 서비스를 위한 KISTI-한국복사전송권협회 간 협정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협력기관 소속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NDSL에 회원가입한 개인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협력기관 소속도서관 이용자는 자신이 전자원문을 파

일형태로 직접 수령할 수는 없으며 소속도서관의 담당사서를 통해 인쇄 출력물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기관 소속도서관 이용자의 경우에도 원문복사서비스 처리 비용을 선불 결제할 경우 개인 신청자로 전환되어 자료 신청 후 자신이 기입한 이메일이나 [My NDSL 메뉴] 내 [신청내역 및 조회]에서 전자원문을 열람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KISTI의 eDDS 시스템 기반의 전자배송서비스는 '도서관간 이루어지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DDS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서비스 운영방식을 도식하면 <그림 2>와 같다.

eDDS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 학술지 및 학술회의 수록 논문을 스캔하여 제공도서관 담당사서가 eDDS 시스템에 저장하면 신청도서관 담당사서와 개인 신청자가 PDF 뷰어를 통해 전자원문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출력은 최초 전자원문 열람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 때 신청도서관 소속이용자는 자신이 전자원문을 파일형태로 직접 수령할 수는 없으며 신청도서관의 담당사서를 통해 인쇄 출력물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다. 전자배송서비스에서 원문복제 신청 분량은 인쇄 학술지와 학술회의 수록 논문의 경우 최대 30쪽까지 가능하다. KISTI가 체결한 협정서를 적용할 경우 신청도서관 또는 제공도서관은 해당 자료의 중간복제물을 작성했을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한 후 파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eDDS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 과정에서 저작권 처리 현황을 요약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림 2〉 eDDS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서비스의 운영 방식

〈표 2〉 eDDS 시스템 기반 전자배송 과정에서 저작권 처리 현황

제공도서관		전자배송시스템		신청도서관		개인신청자 전달 방식
복제대상 자료유형	복제가능 분량	배송 방식	복제방지 조치	담당사서 전달방식	소속이용자 전달 방식	
• 소장하고 있는 인쇄 학술지 및 학술회의 수록 논문	• 학술지 및 학술회의록 수록 논문: 최대 30쪽	• 제공도서관 이 eDDS 시스템으로 스캔/송부	• eDDS 시스템 내 DRM 모듈 적용	• 전자원문 직접 다운로드 불가 • 신청시 기입한 이메일 및 전용뷰어를 통해 전자원문 최초 열람 후 24시간 내 열람/출력 가능	• 담당사서로부터 인쇄 출력물만 수령 가능	• 전자원문 직접 다운로드 불가 • 신청시 기입한 이메일 및 My NDSL 조희메뉴에서 최초 전자원문 열람 후 24시간 내 열람/출력 가능

5. 논의와 제언

5.1 논의

5.1.1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최근에 와서는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KERIS는 주로 대학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지원하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복전협이 체결한 협정서를 따르고 있다. KISTI는 대학도서관 외에 연구소 도서관과 소속 도서관이 없는 개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원문복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와는 별도로 복전협

과 협정서를 체결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를 토대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협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일부 기관이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가 관련 근거가 없이 실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복전협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저작권관리단체를 대표하는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정서의 내용분석에서 검토하였듯이 두 개의 협정서에서 적용을 받는 저작물은 복전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복전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은 도서관 자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복사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자료는 이 협정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정서와 관련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협정서의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그것이 특정 도서관에 제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도서관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특정 저작권관리단체에 위탁된 자료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협정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 즉,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이 제한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자료유형도 제한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명확히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

비스 관련 규정을 도입하거나 국가기관에서 모든 도서관과 모든 도서관의 자료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2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국내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운영방식을 보면, 제공도서관 담당사서가 소장 자료를 스캔하여 전자배송시스템에 송부하면 신청도서관 담당사서가 해당 전자원문을 열람하여 출력한 후 신청도서관 소속이용자에게 인쇄 출력물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청도서관 소속이용자는 자신이 전자원문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직접 수령할 수가 없다. 전자원문이 디지털 파일형태로 최종 이용자인 신청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디지털 파일은 아날로그 복제물과 달리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경우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복제의 질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디지털 파일이 제공되지 않도록 한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논의도 가능하다. 현재 도서관 이용자들은 디지털 자원을 중심으로 정보를 활용한다. 웹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들은 이제 원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을 선호한다. 특히 오픈액세스 저널 및 논문이 많아지면서 가치 있는 학술자원을 인터넷에서 빠르고 쉽게 구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상호대차형 원문복사물을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한다면 신청한 자료를 찾아가지 않거나, 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상호대차로 신청한 저널논문을 인쇄본으로 받아가기 위해 도서관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료 이용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다.

최근의 정보기술은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면책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일어났을 때 이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보고 출력할 수 있지만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거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고유한 패스워드를 특정 이용자에게만 1회로 부여할 수도 있으며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을 허용된 몇 회만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하고 제한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저작물 이용을 제어할 수 있다. 즉, 저작권의 침해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1.3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대학교서관연합회가 체결한 협정서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고 KISTI가 체결한 협정서는 소속 도서관이 없는 개인 신청자에 대한 원문복사서

비스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한국대학교서관연합회는 대학도서관간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목적으로 복전협과 협정서를 체결한 것이므로 개인 신청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KISTI는 도서관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원문복사서비스도 실시할 필요성에서 이와 관련한 협정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KERIS의 경우 개인 신청자들에게도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신청자에게 지정한 배송지로 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전자배송 방식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ERIS의 경우 도서관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일반 회원 가입자들에게도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서관연합회의 협정서를 적용할 경우, KERIS가 개인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KISTI는 회원 도서관뿐만 아니라 개인 신청자의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전자배송서비스의 경우 개인 신청자는 전자원문을 열람하고 직접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개인 신청자는 제공도서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신하는 경우 복전협이 정하는 저작권료(면당 10원)를 지급하고 저작권료의 지급은 KISTI와 복전협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KISTI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신청자에 대한 전자원문 배송과 출력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원문복사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와의 계약은 저작권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관리단체로서 복전협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협정체결대상자인 KISTI에게 특정 방식으로 특정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특히 도서관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아니라 개인 신청자와 도서관간에 이루어지는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경우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우편 및 복사비용) 이외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2 제언

5.2.1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근거 규정 및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관리단체와의 협정서 체결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1조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앞의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개의 협정서는 현재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단체인 복전협이 모든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이에 대한 사항이 저작권법의 도서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저작권법에 상세히 명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복제가능한 범위를 ‘일부분’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외의 경우에도 ‘구매를 대체하는 정도의 복제’(미국 저작권법 108조 g항)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저작물의 특성이 모두 다르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그 문구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를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근거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1) 복제가능 대상 자료(예: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자료,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등), 2) 복제가능 대상 자료의 복제 범위(예: 저작물의 1/3 또는 논문 한편 등), 3) 신청도서관이 동일 자료에 대하여 원문복사 신청할 수 있는 빈도수, 4) 전달 방법(예: 최종 이용자에게 인쇄물 형태로 전달하되, 일회용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이용자가 직접 복제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출력), 5) 최종 이용자의 복제물 이용 제한(예: 최종 이용자의 화면보기와 출력빈도를 제한하여 무제한의 복제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함), 6) 중간복제물의 처리(예: 신청도서관과 제공도서관이 상호대차를 위하여 만든 중간복제물을 삭제하도록 함), 7) 기술적 조치(예: 이용자에게 의한 출력만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권리보호 장치의 의무를 도서관에 부여함), 8) 원문복사서비스의 대상 제한(도서관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에 한함, 정보서비스 협력체에 가

입한 일반 회원(개인 신청자)을 대상으로 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이용허락의 대상으로 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관리단체와 특정 도서관 단체나 정보서비스 협력체의 대표 기관간에 개별적인 협정을 통해 위에서 제시된 사항이 정해질 경우 협정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 도서관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관리단체와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대표하는 주체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협의 결과는 도서관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도서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협의체를 정부가 주관하여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도출될 때 그 결과가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2.2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전자배송 서비스 방식 도입

우리나라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현대의 이용자의 일반적 정보이용 행태와 맞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요구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이용자에 걸맞게 최종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한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시대의 정보환경에 적합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일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침해가능성을 지나치게 높게 상정하여 도서관에서 변화하는 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이용자의

알권리를 앞세워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1개 도서관만이 저널을 구독하여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상호대차로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도록 하되, 도서관이 그 시대에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방식은 최종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이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제공도서관이 요청받은 자료를 디지털 복제하여 신청도서관에 전달하고 신청도서관은 최종 이용자가 요청자료를 직접 출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실제로는 최종 이용자가 한 부의 인쇄본 복제물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Gasaway, 2013). 이렇게 하면 이용자는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직접 원문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출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기간, 출력을 할 수 있는 빈도수 등에 대해서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여 무제한의 복제와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전송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5.2.3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의 도입

KERIS와 KISTI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원문복사서비스는 회원도서관에 소속된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인 신청자도 다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속 도서관이 없는 개인 신청자는 회원도서관 소속 이용자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개인 신청자에게 저작권료가 지불되는 경우(예를 들어 이용자가 신청하는 자료가 상업적 목적의 사적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등)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저작권료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저작권료는 상업 출판사와의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 정하고 이를 출판사에 지불하거나 저작권관리단체인 복전협과 협정서를 통해 저작권료를 정하고 복전협에게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국립도서관의 원문복사서비스인 BLDSS(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Service)와 독일어권 원문복사서비스인 subito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을 참조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BLDSS의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는 복사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로, 복사물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이외에 저작권료가 별도로 부가된다. 복사본은 저작권자나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 혹은 다른 공인된 라이선스 기관에 의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한 재복사하거나 스캔하거나 디지털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없음을 BLDSS의 이용약관(BLDSS Terms & Conditions)에 명시하고 있다. 독일어권의 subito의 경우 이용자 그룹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는 'subito 직접 이용자 서비스'라고 하며 독일 이용자서비스와 국제 이용자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subito 직접 이용자 서비스는 중개

도서관 없이 이용자에게 직접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저작권료는 출판사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며, 출판사는 이용자 그룹과 발송방법에 따라 저작권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6. 결 론

국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기존의 지역별, 주제별 상호협력체에서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규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면책 내용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은 시점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 복전협과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문복사서비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KISTI가 저작권관리단체인 복전협과 체결한 협정내용을 분석하였고 국내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복전협과 체결한 협정서를 적용할 경우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에 제한이 있으며 자료의 복제물은 회원도서관의 담당사서간에만 전자적으로 전달되고 실제로 최종 이용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또한 KERIS의 경우, 회원도서관의 소속이용자가 아닌 개인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의 경우 이

에 대한 근원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모든 도서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협의회를 정부 주관 하에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발한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는 도서관의 유형,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의 유형, 원문의 전달 방법, 동일 자료에 대한 복제가능 정도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하는 전자배송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전송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서관이 최대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원문복사서비스는 회원도서관에 소속된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인 신청자도 다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외의 경우와 같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여 국내에서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13). 저작권법의 적용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35-254.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235>
- 김종철 (2012). 도서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제한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지영, 이선희 (2013). 과학기술분야 원문제공서비스의 협력 네트워크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443-463.
- 박영길 (2005).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심원식 (2010). 대학도서관의 자원공유의 장벽에 대한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129-143.
- 오동근, 황재영, 여지숙 (2012). 이용자와 상호대차담당자가 인식하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도 분석. 정보관리연구, 43(2), 23-42. <http://dx.doi.org/10.1633/JIM.2012.43.2.023>
- 유수현, 김혜선 (2012).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법적 검토 및 권리처리 유형. 정보관리연구, 43(4), 169-189. <http://dx.doi.org/10.1633/JIM.2012.43.4.169>
- 이선희, 김지영, 김혜선 (2012). 디지털 정보환경과 저작권법 변화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 동향분석

- 및 대응 전략. 정보관리연구, 43(3), 139-160. <http://dx.doi.org/10.1633/JIM.2012.43.3.139>
- 장혜란, 김정아 (2012).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의 원문복사서비스 이용 분석과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233-250.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233>
- 최재황 (2008a).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 개선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83-94.
- 최재황 (2008b).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학술지 및 원문복사서비스 만족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69-85. <http://dx.doi.org/10.4275/KSLIS.2008.42.2.069>
- 홍재현 (2004). 학술정보자원의 개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홍재현 (2005).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21-45.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1.021>
- Cornish, G. P. (2015). Reform of UK copyright law and its benefits for librari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43(1), 14-17. <http://doi.org/10.1108/ilds-11-2014-0054>
- Frederiksen, L., Cummings, J., Cummings, L., & Carroll, D. (2011). Ebooks and interlibrary loan: Licensed to fill? Journal of Interlibrary Loan, Document Delivery & Electronic Reserve, 21(3), 117-131. <http://doi.org/10.1080/1072303x.2011.585102>
- Gasaway, L. N. (2013). Copyright questions and answers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From the columns of against the grain. Indiana: Purdue University Press.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ang, Hye Rhan, & Kim, Jeong A (2012). Use analysis and evaluation of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 document delive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233-250.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233>
- Choi, Jae-Hwang (2008a). Improvement plan for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at foreign journal supporting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83-94.
- Choi, Jae-Hwang (2008b). Assessing satisfaction on scholarly journals and document delivery services at foreign journal supporting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69-85. <http://dx.doi.org/10.4275/KSLIS.2008.42.2.069>
- Hong, Jae-Hyun (2004). A study on the remunerations and library exemp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service of scholarly information resources. Seoul: KERIS.

- Hong, Jae-Hyun (2005).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21-45.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1.021>
- Kim, Ji-Young, & Lee, Seon-Hee (2013). A study on the collaboration network analysi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443-463.
- Kim, Jong Chul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copyright limitation for library in Korea: Focusing on the article 31 of the copyright law. Ph.D.dis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 Kwak, Dong-Chul (2013). A research on applying copyright law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235-254.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235>
- Lee, Seon-Hee, Kim, Ji-Young, & Kim, Hey-Sun (2012). A trend analysis and strategy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the changing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opyright la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3(3), 139-160.
<http://dx.doi.org/10.1633/JIM.2012.43.3.139>
- Oh, Dong-Geun, Hwang, Jae-Young, & Yeo, Ji-Suk (2012). An analysis of the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perceived by users and librarians on the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3(2), 23-42.
<http://dx.doi.org/10.1633/JIM.2012.43.2.023>
- Park, Young-Gil (2005).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 28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Seoul: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 Shim, Wonsik (2010). A stakeholder analysis for understanding barriers to resource sha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2), 129-143.
- Yoo, Su-Hyeon, & Kim, Hye-Sun (2012). Legal review and copyright clearing methods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of foreign copyrighted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3(4), 169-189. <http://dx.doi.org/10.1633/JIM.2012.43.4.169>